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 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  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 
 전 화 : 490-3315 ~ 9



제1593호 2009. 11. 23.

고 시

제2009-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

..... 2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➡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➡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➡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 → D-2일 편집·교정 → D-1일 편집·교정 → D일 발간

- 🔴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🔴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


## 고 시

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9-52호

###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

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2009-43호(2009.09.30)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197-1번지 외 23필지에 대하여 『주택법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, 같은 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09년 11월 23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사업종류 : 민영주택건설사업
2. 사업명칭 : 망우동 Liga 아파트 신축공사
3. 사업구역의 위치 : 망우동 197-1번지 외 23필지
4. 사업구역 면적

| 구 분     |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| 면 적(m <sup>2</sup> ) | 비 고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구 역 면 적 |     | 망우동 197-1번지 외 23필지 | 29,143.5             |      |
| 대 지 면 적 |     | 망우동 197-2번지 일대     | 22,865.0             |      |
| 공공시설    | 공 원 | 망우동 204-2번지 일대     | 2,982.1              | 기부채납 |
|         | 도서관 | 망우동 204-1번지 일대     | 1,071.3              | 기부채납 |
|         | 도 로 | 망우동 197-4번지 일대     | 2,225.1              | 기부채납 |

5. 사업주체의 성명 : (주)다올유씨엘 대표 조경문
6. 사업주체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400-13 이오스빌딩 2층
7. 사업의 시행기간 : 2009. 12. ~ 2012. 2.
8. 사업개요

가. 대지면적 : 22,865.0m<sup>2</sup>

나. 건폐율/용적률 : 23.75% / 187.76%

다. 높 이 : 49.7m

라. 용 도 : 아파트 10개동 3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마. 규 모 : 지하2층, 지상7~15층, 연면적 60,864.09m<sup>2</sup>

## 9.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| 관 련 법 률               | 조 항  | 의 제 사 항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건 축 법                 | 제11조 | ○ 건축허가                  |
| 국토의 계획 및<br>이용에 관한 법률 | 제49조 | ○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제56조 | ○ 개발행위의 허가(토지형질변경 허가)   |
| 산지관리법                 | 제14조 | ○ 산지전용허가                |
| 농 지 법                 | 제34조 | ○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      |
| 하 수 도 법               | 제27조 | ○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제34조 | ○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신고   |
| 수 도 법                 | 제23조 | ○ 상수도 공급신청              |

## 10. 주요 변경내용

가.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주동 배치 간격 등 조정

나. 건축계획 일부 변경(단위세대 평면조정, 근린생활시설 면적증가 등)

11.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중랑구 주택과(전화 : 02-490-3381)에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